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동의안은 2014년 2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2월 1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난 2. 13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고, 시군의 읍면동 명칭 변경 등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의원지역선거구를 재획정

3. 주요내용

- 시·군의회 의원 정수 : 131명(현행과 같음)

구분	계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계	131	26	19	13	12	8	8	8	7	7	8	8	7
비례	17	3	2	2	2	1	1	1	1	1	1	1	1
지역	114	23	17	11	10	7	7	7	6	6	7	7	6

○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별표 2)

- 읍면동 명칭변경 : 6개지역선거구 8개읍면동
 - 도의원지역구 변경에 따른 시·군의원 지역구 조정
 - 청주시 '우암동'을 '가'선거구 → '나'선거구로, 영동군 '학산면'을 '가'선거구에서 → '나'선거구로
 - 증평군 '가'선거구 → 2개로 분할('가', '나'선거구)
 - * 기존 '나' → '다'선거구
 - 영동군 '용화면'을 '다'→'나'선거구
- ※ 타 지역선거구는 변동사항 없음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이유

이번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0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평등과 관련하여 시·군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확정시 인구편차 기준¹⁾을 제시함.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을 반영하는 시·군의원 정수는 동법 제23조에서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확정위원회”로 약칭함)가 정하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과 선출의원 정수는 선거구 확정 위원회에서 마련하되 동법 제26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2014년 11월 11일 선거구확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구성된 선거구확정위원회는 시·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하고,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각 정당, 시·군 및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를 도지사안으로 확정하여 2월 14일 도의회에 제출함.

나. 의원정수 책정

시·도별 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별표3)에서 정하고, 우리도 시·군의원 총정수는 131명이며 2010년도 시·군의원 총정수와 동일함.

시·군별 의원 정수는 당해 시·도별 시·군의원 총정수 범위내에서

1) 인구편차 허용 한계는 인구비례, 지역대표성, 도농편차 등 고려할 사항이 유사한 시·도 의원 확정시 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되,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함.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대비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을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시·군별 의원 총수는 기존을 유지하여 조례안 별첨 1과 같이 시·군별 의원 정수를 책정하였음.

다. 선거구 획정

시·군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때에는 분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평균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군안에서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평균인구를 최소 40%, 최대 160%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고자 청주시 '가'선거구의 '우암동'을 청주시 '나'선거구로 하고, 영동군 '가'선거구의 '학산면'을 '나'선거구로 함.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편의성을 위하여 증평군 '가'선거구를 '가', '나'선거구의 2개로 분할하고, 기존 '나'선거구를 '다'선거구로 변경하였음. 그리고 주민 생활권을 고려하여 영동군 '다'선거구의 '용화면'을 '나'선거구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면·동의 명칭이 바뀐 것을 반영하였음.

정안을 법 시행일 후 5일까지(2월 1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2월 25일까지)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위 기간까지도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과 부칙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특례)에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3월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붙 임 : 1.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